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6415 정보공개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

대표자 정강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소리, 박진석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추지원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843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1. 4.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처분 중 '나라사랑교육 영

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